

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34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04월 24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지원사업 중 바우처지원, 건강권 증진·문화체육활동경비·자산형성금 일부 지원 등은 일반노동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삭제하고 입법체계 기술방식에 맞춰 정비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와의 저촉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함(안 제5조제2항).
- 지원사업 중 바우처지원, 건강권 증진·문화체육활동경비·자산형성금 등은 적용 범위의 과도함으로 인해 삭제함(안 제9조제1항제4호, 제7호, 제8호, 제9호).

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
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안 제2조 중 항 번호를 호 번호로 한다.

안 제3조제1호 중 “시에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”로 한다.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
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
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안 제6조제3항 중 “등 개최를 통하여”를 “등을 개최해”로 하고, 같은 조
제4항 중 “포함될 경우 제 1항”을 “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제4호 중 “필요물품 및 바우처 지원”을 “필요물품”으로 하

고,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① “노무제공자”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② “프리랜서”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대상) (생략)</p> <p>1. <u>시에</u> 주소를 둔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5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① <u>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② <u>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기본계획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에서 활동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“노무제공자”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“프리랜서”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대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</u> ----- -----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<u>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제6조(기본계획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

개정안	수정안
<p>청회,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</p> <p>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기본계획이 포함될 경우 제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지원사업 등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·지원을 위한 안전장구 등 <u>필요물품 및 바우처</u> 지원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7. <u>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 건강권 증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</u></p> <p>8. <u>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활동경비 일부 지원</u></p> <p>9. <u>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금 일부 지원</u></p> <p>10. (생략)</p> <p>11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----- <u>등을 개최해</u> ----- 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u>포함되는 경우에는</u> <u>제1항</u>-----.</p> <p>제9조(지원사업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필요물품</u> -----</p> <p>5.·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7. (개정안 제10호와 같음)</p> <p>8. (개정안 제11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무제공자”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프리랜서”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

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경우
2. 사업장 소재지를 시에 둔 경우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

향상,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·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업종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·지원을 위한 대책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4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피해 예방·구제를 위한 교육·홍보
5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·지원을 위한 법·제도 개선사항
6.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기본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계획)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·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8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, 보수, 계약조건, 피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안전·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
2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노동조건·노동환경 개선
3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·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
4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·지원을 위한 안전장구 등 필요물품 지원
5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6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교육, 상담,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
7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업
8.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권익보호지침 등)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지침(이하 “권익보호지침”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보급·적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와 공사·공단 및 출연·출자기관(이하 “산하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권익보호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,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기업·기관·협회 등의 장에게 권익보호지침 등의 준수·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으로 하여금 권익보호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④ 권익보호지침 등을 개발·보급·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표준계약서)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(이하 “표준계약서”라 한다)를 개발하여 보급·적용한다.

② 시장은 시와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하고, 서

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기업·기관·협회 등의 장에게 표준계약서의 준수·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④ 표준계약서를 개발·보급·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권익보호 지원센터)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, 보수 지연지급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·세무·노무 상담·대응 지원
2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피해 예방·구제
3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·홍보
4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·육성 지원
5.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

제13조(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제12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

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기관·단체 지원)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·기관에 한한다.

1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경력관리 지원
2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·훈련
3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
4.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피해 사례 조사·보호를 위한 캠페인
5.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제언
6. 그 밖에 시장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기본계획으로 본다.